2023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간석동 100-2번지 업무시설 신축(계획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		심의일자	2023. 5. 12.		
건축종별	[○]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최영길						
대지현황	남동구 간석동						
	100-2		관련지번				
	대지면적 2,336.8㎡	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일반상업지역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,469.27 m²		건폐율 62.87%		층수 지하 : 4층/ 지상 : 28층		
	주용도 업무시설(오피스텔)	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동		
	최고높이 86.4m		용적률	₫ 893.62%	연면적 합계 29,612.04㎡		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		
	(계획분야)관련	O 피트층 피난통로 통로폭 1.5m를 개구부도 확보할 것 O 주차출입구 부분 보행자를 위한 차량 진출입 경보장치 설치할 것 O 중앙홀 open부분 채광창 방화유리로 설치하여 복도에 자연채광 가능하게할 것					
	(구조분야)관련	O 구조분야 의견 구조심의 시 반영하여 제출할 것					
	(토목분야)관련	토목문야)관련			L(±)0.00m에 대한 기준표고를 설계도면에 명기할 것 : 지하안전평가 조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 조사할 것		
	(소방분야)관련	○ 건축물 인근 공용도로에 비상 시 소방차량 진출입 및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불법주정차 CCTV설치할 것 ○ 태양광패널 접속함 내 아크차단기 내장된 KS인증제품으로 설치할 것					
	(행정)사항	O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O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O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	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